



## 2. 간이신청 대상자

1) 발급대상: 아래 'A ~ K'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

- 
- A.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을 받은 자
  - B. 대한민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자
  - C. 관용, 외교여권 소지자이나 공무 외 다른 목적의 일반여권으로 방문하려는 자
  - D. 복수사증 요건해당자 또는 복수사증 발급경력자
  - E. 빈번출입국자(최근 2년 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방문자)
  - F. 최근 5년간 OECD회원국(한국, 몽골인의 무사증 방문국가 제외) 2개국 이상 또는 3회 이상 방문자
  - G. 최근 1년 이내 대한민국을 2회 이상 단기간 방문한 자로서 한국과 거래실적이 입증되는 자
  - H. 국민(국적취득자) 및 국민의 배우자(F-6)의 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19세 미만 자녀)
  - I. 거주자격자(F-2), 영주자(F-5)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19세 미만 자녀)
  - J. 취재(D-5), 종교(D-6), 주재(D-7), 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E계열(E-9 제외)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19세 미만 자녀)
  - K. 'C~G' 요건 해당자의 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19세 미만 자녀)
- 

2) 발급내용: 단기초청(C-3-1), 단기상용(C-3-4), 일반관광(C-3-9)

3) 사증종류 (유효기간/체류기간): 단수(S): 3개월/90일, 더블(D): 6개월/90일

4) 유의사항: 상기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범법사실, 출입국 및 체류실태 등을 고려, 불법체류 또는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불허되며,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
**A**

중앙행정기관,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·회의 참가, 일반연수, 친선 경기 참가 등의 목적으로 초청을 받은 자

### 신청인 구비서류

- 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  2. 여권/여권사본 1매
  3. 양국 해당단체의 협조공문
    - 몽골측: 피초청 단체소개, 행사개요, 경비부담 사항 및 참가자 명단 포함, 재직증명서,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- 한국측: 행사개요, 경비부담자(항공료, 체류경비에 대한 사항), 참가자 명단 포함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 번호증) 사본: 초청기록관리 상 반드시 필요
  4. 혼인관계증명서

※ 초청이란 invitation letter의 의미(방문허가의 의미가 아님)

**B**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제기구의 초청으로 입국하는 자

**신청인 구비서류**
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양국 해당단체의 협조공문
  - 몽골측: 소개, 행사개요, 경비부담 사항 및 참가자 명단 포함
  - 한국측: 행사개요, 경비부담자(항공료, 체류경비에 대한 사항), 참가자 명단 포함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 번호증) 사본: 초청기록관리 상 반드시 필요
4.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직입증 서류
5. 혼인관계증명서

**C** 외교·관용여권 소지자이나 일반 여권으로 관광, 치료, 친지방문 등 공무 외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

**신청인 구비서류**
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자격 입증서류: 유효한 외교/관용여권 사본 제출(유효기간 최소 3개월 이상), 재직증명서
4. 혼인관계증명서

**D** 복수사증 요건해당자(1. A~M) 또는 복수사증 발급경력자

**신청인 구비서류**
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요건 입증자료(사증 및 출입국 도장 날인 면 사본)
4. 혼인관계증명서

**E** 빈번출입국자(최근 2년 내 4회 이상, 통산 10회 이상 방문자)

**신청인 구비서류**
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  2. 여권/여권사본 1매
  3. 신청요건 입증자료(사증 및 출입국 도장 날인 면 사본)
  4. 혼인관계증명서
- ※ E9, E10, C4로 출입국한 경우는 횡수에서 산입제외

**F** 최근 5년간 OECD회원국(한국, 몽골인의 무사증 국가 제외) 중 2개국 이상 또는 3회 이상 방문한 자

○ 몽골인의 무사증 방문국가: 칠레, 이스라엘, 터키

**신청인 구비서류**
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신청요건 입증자료(사증 및 출입국 도장 날인 면 사본)
4. 혼인관계증명서

**G** 최근 1년 이내 대한민국을 2회 이상 단기간 방문한 자로서, 한국과 거래실적이 입증되는 자

**신청인 구비서류**
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한국회사와 거래실적 입증서류
4. 출입국 도장이 날인된 여권 사본
5. 혼인관계증명서

**H** 국민(국적취득자) 및 국민의 배우자(F-6)의 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자녀)

- 신청대상: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자녀(배우자의 자녀인 경우 만 19세 미만 자녀만 해당)
- 사증종류: C-3-1(단기초청)
- ※ 국민의 배우자가 초청자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는, F-6 발급대상임

**신청인 구비서류**
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출생증명서(E-Mongolia 출력본 제출을 기본으로 함)
4. 가족관계 입증서류(배우자 초청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)

**초청인 구비서류**

1. 초청장(원본):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아래내용 필수 기재
  - 피초청인과 초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
  - 피초청인과의 관계, 초청기간, 초청목적, 보증사항 등
    - 국민: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시(공증불요), 공증받은 경우 인감증명서 사본
    - 교민: 교민 귀국보증각서(대사관 지정양식), 거주등록증 사본,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 날인 또는 서명
- ※ 초청장 양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, 대사관 초청장 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양식의 초청장도 사용 가능(다만 대사관 초청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2. 초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  - 귀화자: 외국인등록사실 증명(출입국사무소 발급) 또는 기본증명서(상세)
3. 가족관계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  - 배우자 초청: 혼인관계증명서
  - 본인·배우자의 부모, 자녀 초청: 본인(귀화자) 및 배우자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E-Mongolia 출력본 제출
- ※ E-Mongolia 출력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출생증 원본 제출

**I** 거주자격자(F-2), 영주자(F-5) 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자녀)

- 신청대상: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만 19세 미만 자녀
- 사증종류: C-3-1(단기초청)
- ※ 영주·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초청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는, F-1/F-2 대상임

**신청인 구비서류**

1.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2. 여권/여권사본 1매
3. 출생증명서(E-Mongolia 출력본 제출을 기본으로 함)
4. 가족관계 입증서류(배우자 초청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)

### 초청인 구비서류

- 초청장(원본):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아래내용 필수 포함
  - 피초청인과 초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
  - 피초청인과의 관계, 초청기간, 초청목적, 보증사항 등
  - 국민: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시(공증불요), 공증받은 경우 인감증명서 사본
  - 몽골인: 초청장 및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동의서 제출(공증 필요)

※ 초청장 양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, 대사관 초청장 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양식의 초청장도 사용 가능(다만 대사관 초청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
  - 초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과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
  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
### J

취재(D-5), 종교(D-6), 주재(D-7), 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E계열(E-9 제외)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19세 미만 자녀)

- 신청대상: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만 19세 미만 자녀
- 사증종류: C-3-1(단기초청)

### 신청인 구비서류

-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- 여권/여권사본 1매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 입증서류

### 초청인 구비서류

- 초청장(원본): 공증받은 초청장(아래내용 필수 포함)
    - 피초청인과 초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
    - 피초청인과의 관계, 초청기간, 초청목적, 보증사항 각서내용 등

※ 초청장 양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, 대사관 초청장 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양식의 초청장도 사용 가능(다만 대사관 초청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  - 초청자 외국인등록증 사본(앞 뒷면), 재직증명서
- ※ D-8 체류자의 경우 회사 사업증등록증 사본, 납세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

### K

'C~G' 요건 해당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19세 미만 자녀)

### 신청인 구비서류

- 사증발급신청서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
- 여권/여권사본 1매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 입증서류